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내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05월 0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성명 | 성명 생년월일 | 최종신고 주소 | 신고사항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정** | 정** 1961-06-08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밤바치길 | 재등록 |
| 장** | 장** 1974-12-17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방내로 | 재등록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염지원 문의전화 : 033-430-4702)

2024년 04월 24일

내면장

